

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681
------	-----

2005. 6. 30.
도시관리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5년 3월 4일, 서울특별시청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5년 3월 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

- 제154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(2005년 3월 25일) 상정, 보류
-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(2005년 5월 27일) 상정, 보류
- 제28회 정례회 제2차 도시관리위원회(2005년 6월 24일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도시계획국장 김영걸)

가. 제안이유

- 2005.01.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·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후속절차를 이행하여 합리적인 행정규제를 도모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3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입지가능토록 함(제38조제12호 신설)
-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상기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은 공항관리청과 협의하여 공항시설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지가능토록 함(제49조제2호 단서 신설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안석수)

가. 제안배경 및 경과

- 2005.1.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특별시, 광역시의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축제한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 및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여 2005.1.31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출되었음

나. 개정안의 주요 특징

첫째,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제를 완화하였음

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중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

둘째,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할 수 없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에 대하여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음

공익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은 공항관리청과 협의하여 공항시설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음

다. 세부사항 검토결과

- 안 제38조(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)
 - 개정안에서 레미콘공장 또는 아스콘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됨

- 안 제49조(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)
 - 개정안에서 레미콘공장과 아스콘공장은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법에 의해 건축제한을 받고,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음
 - 동 조례 개정안의 단서조항 신설의 실제 사유는 특정지구 서울 숲 추진에 따라 이 지역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의 이진이 불가피하여 동 지구에 레미콘공장 이전 부지로 대두된 바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짐
 - 입법예고시 강서구에서는 강서구의 대부분이 장기간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장설립시 불이익으로 인해 민원이 있고, 특정한 시설의 설치를 가능토록 할 경우 많은 민원이 예상되며 주변 개발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
 -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레미콘 생산업체는 8개 회사 10개 공장으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양질의 레미콘 확보를 위하여 공사현장까지 90분내에 도달할 수 있는 서울시 관내에 레미콘공장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, 이 지역에 지속적인 주민 기피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 레미콘공장 설치를 가능토록 하는 동 단서조항의 신설 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

질의) 공항시설보호지구는 특정 자치구에만 결정된 것 아닙니까? 특정지역을 결정하고 나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까?

답변) 우리 시에서는 아직 특정지역을 지정한 사실은 없습니다. 본 개정조례는 기준일 뿐입니다.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소위원회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별첨 수정이유 및 주요 골자 참조

8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(출석위원 전원 찬성)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.....